

「對犯罪戰爭」宣布의 政策的性格과 警察의 對應方向

李 寬 熙
(警察大 教授)

1. 「對犯罪戰爭」宣布의 意義

지금 우리 社會는 범죄·폭력·호화·사치·퇴폐·향락 및 일 안하는 풍조·투기·도덕성의 결여 등 各種 社會的 病理現象이 危險水位까지 到達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原因을 살펴보면, 1960年代以後 經濟의 급속한 成長, 分配의 不均衡, 不動産 投機 등에 의한 不勞所得 階層의 登場, 황금만능 풍조, 도시 과밀화, 人間輕視, 6·29宣言以後 大統領直選에 이은 民主化過程의 轉換期的 無秩序, 政治圈의 혼란 등이 遠近因이 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大統領은 「10·13 새秩序, 새生活實踐」特別宣言을 통해, 우리 社會內部的 도전을 극복해야겠다는 결연한 意志를 밝히며, 첫째, 犯罪과 暴力에 대한 戰爭을 宣布하고, 둘째, 民主社會의 기틀을 위협하는 不法과 無秩序를 追放하며, 셋째, 過消費와 투기·퇴폐와 享樂을 바로잡아 '일하는 社會', '건강한 社會'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民主·繁榮·統一을 위한 '참된 價値體系와 道德性이 具現된 社會' 즉 '犯罪의 두려움이 없는 社會', '秩序있는 社會', '일하는 健康한 社會'를 건설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否定的인 視角도 있다. 그것은 마치 모든 社會混亂의 責任이 一團의 흉악범들에게만 있는 양, 분위기를 오도하기 쉽고, 또한 아직도 社會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例外的인 犯罪現象을 社會의 主流속에 범람하고 있는 양 그것을 과대포장하여, 國民一般을 犯罪視할 危險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

회는 '범죄소탕을 위한 戰爭'을 大統領이 宣布해야 할 정도로 '秩序維持와 法の支配'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國民의 共感帶이라고 보여진다. 新聞등의 各種 輿論調査¹⁾도 일단 「對犯罪戰爭」宣布를 긍정적으로 評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II.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接近

大統領은 「10.13特別宣言」에서 「對犯罪戰爭」을 宣布함에 있어서 憲法이 부여한 大統領의 모든 權限을 動員해서 犯罪를 소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根據는 무엇이며, 憲法上 어떠한 權限行使가 可能할 것인가를 살펴 보는 것도 有意義한 일이라 할 것이다.

1.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根據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根據는 大統領의 最高國政責任者로서의 地位와 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및 基本權保護機關으로서의 地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²⁾

즉 우리 憲法은 大統領에게 「國家의 獨立, 領土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和 憲法을 守護할 義務」(\$66. ②)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誠實한 義務」(\$6. ③)를 지우면서, 大統領으로 하여금 그에相應한 就任宣誓를 하도록 하는 것(\$69) 등 大統領을 國政의 最高責任者로 하고 있고, 또한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

1) 최인섭, 「對犯罪戰爭의 評價 및 民衆治安에 관한 國民輿論調査」, 刑事政策硏究소집(第3號), 1991. 1. 2,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에 관한 學說은 다음과 같다. (1) 金東희교수(新憲法疏論, 博英社, 1987, 340~342면)는 ①國家元首로서의 地位 ②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로, (2) 權泰星교수(憲法學學說, 法文社, 1988, 793~796면)는 ①國家元首로서의 地位(對外的으로 國家를 代表, 國家와 憲法의 守護者, 國政의 最高監督者, 憲法機關構成者)와 ②執行府 首班으로서의 地位(執行의 最高指揮責任者, 執行府組織權者, 國會會議議長)로, (3) 金行株교수(新憲法概說, 博英社, 1987, 307~308면)는 ①國家元首로서의 地位 ②主權行政機關 ③行政權首班 ④國家守護者로, (4) 許養正교수(韓或憲法論, 博英社, 1990, 905~907면)는 본문에서 든 3가지 地位이외에 國家元首, 代議機關으로서 地位를 들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이 分類에 따른다.

회는 '범죄소탕을 위한 戰爭'을 大統領이 宣布해야 할 정도로 '秩序維持와 法の支配'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國民의 共感帶이라고 보여진다. 新聞등의 各種 輿論調査¹⁾도 일단 「對犯罪戰爭」宣布를 긍정적으로 評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II.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接近

大統領은 「10.13特別宣言」에서 「對犯罪戰爭」을 宣布함에 있어서 憲法이 부여한 大統領의 모든 權限을 動員해서 犯罪를 소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根據는 무엇이며, 憲法上 어떠한 權限行使가 可能할 것인가를 살펴 보는 것도 有意義한 일이라 할 것이다.

1.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根據

「對犯罪戰爭」宣布의 憲法的 根據는 大統領의 最高國政責任者로서의 地位와 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및 基本權保護機關으로서의 地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²⁾

즉 우리 憲法은 大統領에게 「國家의 獨立, 領土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66. ②)와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위한 誠實한 義務」(\$6. ③)를 지우면서, 大統領으로 하여금 그에相應한 就任宣誓를 하도록 하는 것(\$69) 등 大統領을 國政의 最高責任者로 하고 있고, 또한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

1) 최인섭, 「對犯罪戰爭의 評價 및 民衆治安에 관한 國民輿論調査」, 刑事政策研究소집(第3號), 1991. 1. 2. 韓國刑事政策研究院.

2) 大統領의 憲法上的 地位에 관한 學說은 다음과 같다. (1) 金東희교수(新憲法疏論, 博英社, 1987, 340~342면)는 ①國家元首로서의 地位 ②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로, (2) 權泰星교수(憲法學學說, 法文社, 1988, 793~796면)는 ①國家元首로서의 地位(對外的으로 國家를 代表, 國家와 憲法의 守護者, 國政의 最高監督者, 憲法機關構成者)와 ②行政府 首班으로서의 地位(執行의 最高指揮責任者, 執行等組織權者, 國會會議議長)로, (3) 金行株교수(新憲法概說, 博英社, 1987, 307~308면)는 ①國家元首로서의 地位 ②主權行政機關 ③行政權首班 ④國家守護者로, (4) 許養正교수(傳或憲法論, 博英社, 1990, 905~907면)는 본문에서 든 3가지 地位이외에 國家元首, 代議機關으로서 地位를 들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이 分類에 따른다.

에 속한다」 (§66. ④) 고 規定함으로써 3權分立的 構造內에서 大統領은 行政權을 총괄하는 行政府首長으로서의 地位를 分明히 하고, 大統領이 國務會議의 議長으로서 여러가지 執行機能을 政策的으로 主導하고 (§88), 行政府의 執行에 관하여 最終的 決定權을 갖는 것도 바로 이 大統領의 行政府首長으로서의 地位에서 나온다. 한편 大統領의 基本權 保護機關으로서의 地位는 구태여 大統領의 憲法守護義務 (§66. ②)와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努力한다는 그 就任宣誓 (§69)를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大統領이 갖는 法律公布權 및 拒否權 (§53. ①③), 公務員任命權 (§78), 赦免權 (§79), 國家緊急權 (§76, §77) 등은 國民의 基本權保護의 觀點에서도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大統領의 最高國政責任者로서의 地位, 行政府首長으로서의 地位 및 基本權 保護機關으로서의 地位에서, 大統領이 스스로 우리 社會의 治安情勢를 判斷하여 「對犯罪戰爭」宣布가 可能했다고 본다.

한편 憲法 第73條는 大統領의 國家元首의 地位에서 外交에 관한 權限으로 外國에 대하여 宣戰布告權을 規定하고, 國會의 同意 (§60)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對犯罪戰爭」宣布와는 無關係함은 물론이다.

2. 憲法上 可能的 權限行使

大統領이 「對犯罪戰爭」遂行에 있어서 取할 수 있는 憲法上 可能的 權限行使는 行政府首長으로서의 地位에서 나오는 行政·立法的 措置이다. 즉 大統領은 行政府의 執行에 관한 最終決定權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立法에 관해서도 行政立法 (§75)을 비롯해서 法律制定過程에서도 적지않은 牽制的인 權限〔法律案提案權 (§52), 國會臨時召集要求權 (§47. ①③), 國會出席發言權 (§81), 法律案公布權과 拒否權 (§53. ①. ②)〕을 「對犯罪戰爭」遂行에 있어 憲法上 그러한 모든 行政·立法的 措置를 取할 수 있다.

3 許錫, 前掲書, 907면.

그러나 國政의 最高責任者로서의 地位에서 나오는 統治的 權限으로서의 國家緊急權(緊急命令權(\$76), 戒嚴權(\$77))은 그 要件으로 보아 「對犯罪戰爭」遂行과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즉 憲法 第76條 第1項의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權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유가 없을 때에 限하여 最小限으로 必要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2項의 緊急命令權은 「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關係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를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第1項의 大統領의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權의 要件 中, 「內憂」에는 「對犯罪戰爭」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또다른 要件 즉 國會를 召集할 時間的 餘裕가 없다가거나, 그 處分·命令이 財政·經濟分野에 局限되기 때문에, 大統領의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權은 「對犯罪戰爭」遂行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第2項의 大統領의 緊急命令權도 그 要件上 주로 外國과의 戰爭과 같은 非常事態下에서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局限되므로, 역시 「對犯罪戰爭」遂行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1972年 憲法(第4共和國)上の 緊急措置權⁴⁾이나 1980年 憲法(第5共和國)上の 非常措置權⁵⁾ 下에서라면 그 要件의 包括性으로

4) 「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가 重大한 威脅을 받거나 받을 虞가 있어, 迅速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될 때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 등 國政全般에 걸쳐 必要한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53. ①) 「緊急措置의 效力은 憲法에 규정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時적으로 停止하는 緊急措置를 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53. ②)고 하였다.

5) 憲法 第51條에 「① 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을 위협하는 交戰狀態나 그에 連하는 非常事態에 處하여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迅速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할 때에는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 등 國政全般에 걸쳐 必要한 非常措置를 할 수 있다. ② 大統領은 第1項의 情形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憲法에 규정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時적으로 停止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인하여 「對犯罪戰爭」宣布와 관련하여 大統領의 權限行使가 可能할 수도 있겠다고 본다.

한편 現行 憲法 第77條의 大統領의 戒嚴宣布權도 그 要件으로 보아 「對犯罪戰爭」遂行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즉 그 要件은 「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必要에 應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라 함은 武裝集團에 의한 폭동, 天災 또는 多衆의 不法行爲로 인한 극도의 社會秩序 混亂狀態등이 現實적으로 發生한 경우에 限하고 앞으로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狀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⁶⁾ 戒嚴은 一種의 鎮壓的인 非常措置이지 豫防的인 措置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軍兵力을 동원하지 않고는 非常事態의 수습이 도저히 不可能한 경우에 限하기 때문에 警察兵力만으로도 事態의 수습이 可能한 때에는 戒嚴宣布의 緊急性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大統領의 戒嚴宣布權도 「對犯罪戰爭」遂行과는 역시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Ⅲ. 美國에서의 「對犯罪戰爭」⁷⁾ (War on Crime)

Johnson 美大統領은 1966年 3月 9日 議會演說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犯罪問題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우리가 平凡하게 行動한다면 결코 승리란 있을 수 없다. 오래된 惡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치는 敵에 대하여 最大限의 努力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重大한 決心으로 새로운 知識, 새로운 技術 및 새로운 理解를 모색하여야 한다.”

6) 同旨: 丘秉勳, 前掲書, 351면; 權宰星, 前掲書, 823면; 金濟賢, 前掲書, 320면; 許容, 前掲書, 918면.

7) 루시美大統領은 1989年 9月 「마약과의 戰爭」을, 佛의 시락르首相은 1986年 9月 「對 테러 戰爭」을 宣布한 바 있지만, 本稿에서는 1965年 7月 존슨 美大統領의 「對犯罪戰爭」을, Richard Quinney, *Criminology*, 1979, 2nd, pp.39~41에 의하여 소개한다.

인하여 「對犯罪戰爭」宣布와 관련하여 大統領의 權限行使가 可能할 수도 있겠다고 본다.

한편 現行 憲法 第77條의 大統領의 戒嚴宣布權도 그 要件으로 보아 「對犯罪戰爭」遂行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즉 그 要件은 「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的 必要에 應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라 함은 武裝集團에 의한 폭동, 天災 또는 多衆의 不法行爲로 인한 극도의 社會秩序 混亂狀態등이 現實적으로 發生한 경우에 限하고 앞으로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狀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⁶⁾ 戒嚴은 一種의 鎮壓的인 非常措置이지 豫防的인 措置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軍兵力을 동원하지 않고는 非常事態의 수습이 도저히 不可能한 경우에 限하기 때문에 警察兵力만으로도 事態의 수습이 可能한 때에는 戒嚴宣布의 緊急性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大統領의 戒嚴宣布權도 「對犯罪戰爭」遂行과는 역시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Ⅲ. 美國에서의 「對犯罪戰爭」⁷⁾ (War on Crime)

Johnson 美大統領은 1966年 3月 9日 議會演說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犯罪問題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우리가 平凡하게 行動한다면 결코 승리란 있을 수 없다. 오래된 惡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치는 敵에 대하여 最大限의 努力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重大한 決心으로 새로운 知識, 새로운 技術 및 새로운 理解를 모색하여야 한다.”

6) 同旨: 丘秉勳, 前掲書, 351면; 權宰星, 前掲書, 823면; 金濟賢, 前掲書, 320면; 許容, 前掲書, 918면.

7) 루시美大統領은 1989年 9月 「마약과의 戰爭」을, 佛의 시락르首相은 1986年 9月 「對 테러 戰爭」을 宣布한 바 있지만, 本稿에서는 1965年 7月 존슨 美大統領의 「對犯罪戰爭」을, Richard Quinney, *Criminology*, 1979, 2nd, pp.39~41에 의하여 소개한다.

「對犯罪戰爭」은 實際적으로 1965年 7月 23日 Johnson行政府가 命令으로 “法執行司法管理大統領委員會”(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 Administration of Justice)를 設置함으로써 始作되었다.

大統領委員會는 19名의 委員, 63名의 研究員, 175名의 相談役, 數百名의 諮問委員으로 構成되었다. 調査期間동안 5回의 全國會議, 5回의 全國調査, 數百回의 會合, 數萬名의 인터뷰 등이 이루어졌다. 많은 雜誌가 委員會로부터 나왔으며, 特別報告書도 만들어졌다. 結局 委員會의 活動은 “自由社會에서의 犯罪의 挑戰”이라는 책으로 要約됐다.

委員會는 우수한 사람들로 構成되었지만, 그들의 大部分은 그 문제에 대해 一般的인 教養人에 不過했다. 그러나 모든 委員들은 犯罪問題를 分析하는데 個人的인 興味를 갖고 있었다. 또한 委員會는 公正한 輿論形成을 위하여 여러 構成員들로 均衡을 취하였다. 法執行官, 辯護士, 判事, 뉴욕市長, 新聞人, 大學總長, 法學教授, 民權運動者, 女性檢事, 女性投票者聯盟會長 등. 委員會의 報告는 그 時代의 自由로운 思考를 反映하고, 다음과 같은 目的을 追求함으로써 犯罪가 減少될 수 있다고 結論지었다.

첫째, 法執行을 強化하고, 犯罪의 機會를 줄이고 事前豫防함으로써 모든 美國人에게 美國生活을 혜택을 주도록 모두가 努力할 것.

둘째, 刑事司法制度가 犯罪者를 다루는 功備한 技術을 갖고 發展된다면 犯罪를 減少시키는데 有益할 것이다.

셋째, 刑事司法制度는 그 目的을 達成하고, 市民의 協助와 尊敬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現存하는 不正要素를 척결해야 한다.

넷째, 刑事司法制度는 보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 警察·檢事·刑事·保護觀察官·矯導官 등 보다 많은 知識·經驗·積極性·謹嚴性을 必要로 한다.

다섯째, 刑事司法制度 內外의 사람들에 의하여 犯罪와 犯罪對策에 대하여 보다 機能的이고도 根本的인 研究가 行하여져야 한다.

8)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여섯째, 警察·法院·矯導官은 그들의 犯罪統制能力을 涵養하기 위하여 實質的으로 보다 많은 財政支援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個人市民·民間團體·宗教團體·政府 모두는 犯罪를 減少시키기 위하여 刑事司法制度를 補充할 責務가 있다.

委員會는 充分한 資金과 活動으로써 美國의 諸制度를 크게 變更시키지 않고, 犯罪를 소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명히 大統領 犯罪委員會는 法體系에 있어서 主된 變化를 提示하지 않았고, 犯罪原因은 어디까지나 個人(犯罪者)과 社會的 條件에서 찾으려 했다. 刑法 그 自體가 犯罪의 原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人間行動에 대한 制裁와 刑罰로서 刑法을 使用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犯罪는 法으로 規定되는 것이 아니고, 法에 關係없이 存在하는 愆이다. 그러한 愆은 犯罪에 대한 강극적인 勝利로서만 根絶될 수 있다고 大統領委員會는 結論지었다.

IV. 「對犯罪戰爭」遂行의 原則

우리 社會에서 「犯罪와의 戰爭」이 成功하고, 향락·사치 등 無秩序를 追放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지켜야 할 原則들이 있다고 본다.⁹⁾

첫째, 우선 國民의 協助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民主社會에 있어서 犯罪統制活動은 全市民의 協助와 支持없이는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政府 公職者를 포함한 社會 各界各層의 指導的 位置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隱忍自重 率先垂範해야 한다고 본다. 公職社會의 不正·非理를 계속 척결하면서 無私公平의 公職者倫理를 바로 세워야 하며, 政府는 租稅政策, 財政·社會保障政策등을 적극 推進하여 不勞所得階層이 받을 몫 불이도록 하고, 所得이 再分配되어 資本主義經濟에서 소외된 階層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적극 努力해야 한다고 본다. 現在 政府의 貨貸住宅建設 등은 그러한 意味에서 아무리 強調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없는 者의 相對的 剝奪感은 있는 者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러한 庶民階層의 積極的 支援없이는 犯罪·無秩序

9) 孫億, 「對犯罪戰爭과 警察의 姿勢」, 搜查研究(1990, 12), pp. 14~15.

여섯째, 警察·法院·矯導官은 그들의 犯罪統制能力을 涵養하기 위하여 實質的으로 보다 많은 財政支援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個人市民·民間團體·宗教團體·政府 모두는 犯罪를 減少시키기 위하여 刑事司法制度를 補充할 責務가 있다.

委員會는 充分한 資金과 活動으로써 美國의 諸制度를 크게 變更시키지 않고, 犯罪를 소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명히 大統領 犯罪委員會는 法體系에 있어서 主된 變化를 提示하지 않았고, 犯罪原因은 어디까지나 個人(犯罪者)과 社會的 條件에서 찾으려 했다. 刑法 그 自體가 犯罪의 原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人間行動에 대한 制裁와 刑罰로서 刑法을 使用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犯罪는 法으로 規定되는 것이 아니고, 法에 關係없이 存在하는 愆이다. 그러한 愆은 犯罪에 대한 강극적인 勝利로서만 根絶될 수 있다고 大統領委員會는 結論지었다.

IV. 「對犯罪戰爭」遂行의 原則

우리 社會에서 「犯罪와의 戰爭」이 成功하고, 향락·사치 등 無秩序를 追放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지켜야 할 原則들이 있다고 본다.⁹⁾

첫째, 우선 國民의 協助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民主社會에 있어서 犯罪統制活動은 全市民의 協助와 支持없이는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政府 公職者를 포함한 社會 各界各層의 指導的 位置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隱忍自重 率先垂範해야 한다고 본다. 公職社會의 不正·非理를 계속 척결하면서 無私公平의 公職者倫理를 바로 세워야 하며, 政府는 租稅政策, 財政·社會保障政策등을 적극 推進하여 不勞所得階層이 받을 몫 불이도록 하고, 所得이 再分配되어 資本主義經濟에서 소외된 階層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적극 努力해야 한다고 본다. 現在 政府의 貨貸住宅建設 등은 그러한 意味에서 아무리 強調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없는 者의 相對的 剝奪感은 있는 者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러한 庶民階層의 積極的 支援없이는 犯罪·無秩序

9) 孫億, 「對犯罪戰爭과 警察의 姿勢」, 搜查研究(1990, 12), pp. 14~15.

와의 戰爭에서 그 成功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소탕의 對象인 犯罪과 暴力의 範圍를 明白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學生示威와 勞使분규를 이 범주에 넣어 이런 機會에 警察力으로 그런 問題까지 한꺼번에 一括處理해서는 안 될 것이다. 殺傷人·납치·인신매매·강간·강도 등 이른바 個人法益을 해치는 犯罪가 이번 소탕토벌의 對象이어야 한다. 이 課業의 遂行에 있어서는 法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合法的인 手段이 모든 動員되는, 이른바 '最大性의 原則'에 따라 犯罪를 예방·진압하여야 한다.

그러나 學園·勞動分野는 다르다. 그것은 먼저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價値를 理念教育, 勞使平和와 産業安定, 所得의 均分 등 學園教育, 勞動政策 그리고 政治倫理가 맡을 대목이다. 선불리 犯罪統制의 次元에서 秩序行政的인 手段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事態를 더욱 惡化시킬 뿐이다. 다만 그 事態가 화염병 등으로 官公署를 공격하거나 勞使가 감금·구타 등 暴力對決로 치달을 때 警察이 나서는 것이다. 그것은 곧 教育勞動政策이 主된 구실을 담당할 뒤에 補完·補助的인 機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法이 許容하는 범위內에서 不可能하게 最後手段으로 또 가장 抑制된 方法을 택해야 하는 '最小性의 原則'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對犯罪戰爭」 宣布에 따른 警察의 과민반응이 문제된다. 만약 警察이 犯人檢擧 實績 등을 과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무리한 行動을 한다면 오히려 國民의 不信과 빈축을 사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全國의 모든 外勤警察官들에게 支給되고 있는 총기 使用문제에서 특히 注意를 요한다. 現在 檢察은 昨年 9月 以後, 폭력배·소매치기 등 3名을 숨지게 한 警察官 총기발사 事件 中, 두 名에 대해 길게는 一年 以上 正當防衛 與否와 起訴 與否에 대한 決定을 미루고 있다 한다.

이를 조금 살펴보면¹⁰⁾, 먼저 1990年 9月 28日 發生한 城南事件은, 조직폭력배로 手配中이던 崔氏(당시 20세)가 같은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中, 申告를 받고 出動한 李순경 등에게 총기로 저항하고 달아나다 李순경이 등뒤에서 쏜 총탄이 가슴이

10) 동아일보, 1990.10.18, 19년 참조.

관통되어 숨진 事件이다. 숨진 崔氏의 家族 4名은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내 지난 8月 22日 서울民事地法에서 '警察官이 限度를 넘어 총기를 使用한 것'으로 認定받아 2천4백만원의 賠償判決을 받아냈다. 즉 裁判部는 李순경이 달아나는 崔氏를 등뒤에서 총좌 숨지게 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한 것으로 判斷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檢察은 이 判決이 있는 後에도 이제까지 아무런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7月 6日 發生한 '영등포' 事件은 소매치기 金聖佑氏(당시 23세)가 같은날 낮1時頃 영등포6가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3名과 함께 소매치기 犯行을 하다가 李경장이 申告를 받고 出動하자 달아나다 李경장이 쏜 총탄에 허벅지와 가슴을 맞고 숨졌다. 檢察은 당초 '正當防衛'로 認定, 不起訴處分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쪽에서 총을 쏜 점이 '과잉방위' 일 可能性이 높아 고민하고 있다.

以上の 두 事件과는 조금 性格이 다른 '大田' 事件이 있다. 이는 1990年 12月 5日 大田警察署 명정로 과출소 鄭一壽순경이 병원난 동자를 射殺한 事件인데, 이에 대하여는 '正當防衛'로 認定, 鄭순경을 立件하지 않고 '죄가 안됨' 決定을 내렸다. 즉 檢察은 '出動한 鄭순경이 난동을 부리던 徐思錫氏(당시 27세)에게 복도 끝까지 밀리다 徐氏가 들고 있던 칼로 갑자기 찌르는 순간 카빈 소총을 발사, 가슴을 관통시킨 점에 비추어 이는 鄭순경이 자신의 生命을 방어하기 위한 行爲로 社會的으로 相當한 理由가 있었다고 認定되므로 違法性이 없는 正當防衛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以上 본 바와같이 警察官의 총기使用은 실제문제에 있어서 까다로운 점이 많으므로 세심한 注意를 要한다 할 것이다. (警察官職務執行法 第11條 (武器의 使用)참조). 물론 現實的으로 흉악범들의 총기에 대항해야 하는 警察官의 士氣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각 警察署別로 총기使用에 대한 充分한 教育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V. 警察의 對應方向

「對犯罪戰爭」遂行에 있어서 警察의 對應은 한편으로는 現實論으

관통되어 숨진 事件이다. 숨진 崔氏의 家族 4名은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내 지난 8月 22日 서울民事地法에서 '警察官이 限度를 넘어 총기를 使用한 것'으로 認定받아 2천4백만원의 賠償判決을 받아냈다. 즉 裁判部는 李순경이 달아나는 崔氏를 등뒤에서 총좌 숨지게 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한 것으로 判斷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檢察은 이 判決이 있는 後에도 이제까지 아무런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7月 6日 發生한 '영등포' 事件은 소매치기 金聖佑氏(당시 23세)가 같은날 낮1時頃 영등포6가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3名과 함께 소매치기 犯行을 하다가 李경장이 申告를 받고 出動하자 달아나다 李경장이 쏜 총탄에 허벅지와 가슴을 맞고 숨졌다. 檢察은 당초 '正當防衛'로 認定, 不起訴處分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쪽에서 총을 쏜 점이 '과잉방위' 일 可能性이 높아 고민하고 있다.

以上の 두 事件과는 조금 性格이 다른 '大田' 事件이 있다. 이는 1990年 12月 5日 大田警察署 명정로 과출소 鄭一壽순경이 병원난 동자를 射殺한 事件인데, 이에 대하여는 '正當防衛'로 認定, 鄭순경을 立件하지 않고 '죄가 안됨' 決定을 내렸다. 즉 檢察은 '出動한 鄭순경이 난동을 부리던 徐思錫氏(당시 27세)에게 복도 끝까지 밀리다 徐氏가 들고 있던 칼로 갑자기 찌르는 순간 카빈 소총을 발사, 가슴을 관통시킨 점에 비추어 이는 鄭순경이 자신의 生命을 방어하기 위한 行爲로 社會的으로 相當한 理由가 있었다고 認定되므로 違法性이 없는 正當防衛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以上 본 바와같이 警察官의 총기使用은 실제문제에 있어서 까다로운 점이 많으므로 세심한 注意를 要한다 할 것이다. (警察官職務執行法 第11條 (武器의 使用)참조). 물론 現實的으로 흉악범들의 총기에 대항해야 하는 警察官의 士氣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각 警察署別로 총기使用에 대한 充分한 教育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Ⅴ. 警察의 對應方向

「對犯罪戰爭」遂行에 있어서 警察의 對應은 한편으로는 現實論으

로서 犯罪를 소탕하기 위한 具體的인 實踐戰略과 다른 한편으로는 立法論으로서 警察이 國民의 信賴와 協助를 얻고, 犯罪搜查를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警察의 政治的 中立과 搜查權獨立을 保障해야 한다는 警察의 位相 再定立問題로 나누어 考察한다.

1. 「對犯罪戰爭」實踐戰略

1) 警職法 등 改正

1991年 2月 臨時國會에서 警察官職務執行法 改正案과 화염병 使用 등의 處罰에 관한 法 改正案이 通過·確定되었다.

새로 施行되는(3月 8日) 警察官職務執行法은 警察官의 任意同行 時間을 現行 3時間에서 6時間으로 연장하였고¹¹⁾, 警察裝具를 使用할 수 있는 對象에 現行犯人을 포함할 수 있고¹²⁾, 特히 任意同行 時間을 拒否할 自由와 언제든지 警察官署로부터 退去할 自由가 있음을 告知하도록 한 規定이 削除됐다는 것¹³⁾ 등이 그 특징이다.

한편 화염병 使用 등의 處罰에 관한 法은 화염병을 使用해서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危險을 發生하게 한 사람에 대해 3年 以下の 懲役, 5百萬元 以下の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하고¹⁴⁾, 화염병 製造에 提供할 目的으로 화염병 使用의 危險이 있는 場所에서 그 製造에 使用되는 물건 또는 物質을 保管·運搬·所持한 사람은 1年 以下の 懲役이나 1百萬元 以下の 罰金에 處할 수 있게 하였다.

15)

이러한 法改正은 「對犯罪戰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警察 側의 後續措置로 評價된다.

11) 警察官職務執行法 第3條 第6項.

12) 同法 第10條.

13) 그 대신에 警察官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身狀을 표시하는 증표를 穿 1라면식 素복과 襟釦을 밝히고, 그 目的과 理由를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경우에는 停當장소가 明白하도록 하였다. 同法 第3條 第4項

1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法律 第3條 第1項.

15) 同法 第4條 第32項

2) 組織暴力 및 主要犯罪의 소탕¹⁶⁾

첫째, 處犯要素에 대한 波狀的 奇襲打擊으로, 要素別 深層諜報 蒐集活動 強化, 對象에 대한 無差別 集中圍束, 起訴中止者 은신用 發處(안자, 기도원 등) 遮期的 索出, 둘째, 철저한 投網式 檢問檢索으로, 全國的으로 “길목” 設定하여 效率的 檢問實施, 車輛利用犯罪 차단(도난車輛 索出, LPG充塡所申告網構築 등) 軍·警合同檢問 強化하고, 셋째, 組織暴力輩 未檢者 早期檢擧로서, 主要 未檢 暴力 輩頭目級 完檢(11名), 新興組織暴力輩 迅速瓦解, 投錢機·享樂業所 集中圍束하고, 넷째, 組織的인 犯罪豫防活動으로, 犯罪要因을 支·派出所 單位로 總診斷, 112申告即應體制의 補強(3通信裝備補強, 緊急申告電話 112로 統合 등), 豫備軍·在鄉軍人會 防犯活動 支援(年18時間의 豫備軍開課時間의 活用 등), 다섯째, 民生治安力 劇期的 補強으로 民生治安中心體制로 組織補強(本部·警察局 指揮部人力 減縮, 一線補強 등), 人力·裝備持續補強(10位署 46個支派 新設, 人力4422名 增員), 警察官 犯罪現場對應能力量 提高(射擊術, 搜查 技法 教育強化) 등을 들 수 있다.

3) 對女性·어린이 犯罪 剔抉

犯罪로부터의 不安波及影響이 큰 婦女子 拉致·賣買·性暴行, 어린이 誘拐殺人 등 對女性·어린이 犯罪를 強力根絶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國民의 基礎生活空間에 대한 防犯活動 強化로서, 취약 住宅街, 學園街에 固定 “목” 設置 운영하고, 112巡察·도보巡察을 住宅街, 學園街에 集中시키며, 어린이·女性犯罪防犯教育을 強化(警察·學校·女性團體 등) 한다. 둘째, 對女性犯罪 豫防對策強化로서, 對女性犯罪 취약지·취약時間帶에 警察을 固定配屬하고, 휴대용 緊急 救援信號機를 開發보급하며, 性犯罪·幻覺犯·誘拐犯 등의 前科者를 特別管理하며, 犯罪被害女性相談室을 警察局單位로 設置運營한다. 셋째, 對어린이犯罪 根絶策으로서, 유치원·國民學生 登下校時 保護

16) 以下の 「對犯罪戰爭」 實踐戰略은 內務部, 「10.13特別官制」 實踐計劃(1991.1.12)을 參照.

者引繼引受(通學버스運行 등)하며, 略取誘引事犯檢舉 專摺搜查班 設置運營(警察署單位)한다. 넷째, 靑少年犯罪 豫防對策으로서, 未成年者出入制限區域을 設定運營하고, 中高校生 防犯·犯罪豫防教室을 運營하고, 퇴폐·폭력을 助長하는 VTR, 漫畫 등을 收去廢棄한다.

4) 犯罪棲息處의 拔本塞源

全國遊興業所, 電子遊技場, 理髮所 등 總413,000個所를 點檢·團束하여, 155,000個所를 告發 및 行政措置한 結果 어느정도 整備되었으나, 아직도 有害環境이 殘存하고 再發可能性이 常存하므로, 이를 拔本塞源하기 위하여,

첫째, 常習·痼疾業所에 대한 뿌리뽑기式 集中團束으로, 衛生接客業所를 3分化(模範·自律·指導業所)하여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違反業所의 處罰을 強化하며 (名單公開, 體刑爲主 處罰, 重課稅), 無許可業所는 強力制裁(營業場閉鎖, 斷電斷水)한다. 둘째, 深夜 및 퇴폐·변태·不法營業根絶策으로서, 深夜·不法營業行爲를 強力規制하고, 投錢機業所 및 電子遊技場 등 射倖行爲를 徹底團束하며 理容業所 퇴폐行爲를 持續團束한다. 셋째, 學校週邊, 住宅街의 完全淨化策으로서, 有害業所를 完全分離(有害業所 카트화 集中管理—自進轉業誘導 등)하고, 學校週邊 淨化區域內 違反業所 完結척결(檢·警·教育委·教師·學父母 合同指導團束 強化 등)한다. 넷째, 社會的 監視 및 自律淨化機能強化策으로서, 職能組合·協會 등에게 自律監視 및 摘發機能을 賦與하고, 各級社會團體의 總力監視體制를 構築한다.

5) 國民自律防犯體制의 構築

警察力만으로는 完壁한 犯罪豫防·檢舉에 限界가 있으므로,

첫째, 國民의 自警意識의 提高策으로서, 民防衛申告網을 整備하고, 住民登錄 一齊調查를 通하여 犯法者 등을 索出하며, 印鑒再申告時 起訴中止者를 索出하며, 防犯非常벨을 設置擴大하고, 貴重品의 銀行保管을 권장한다. 둘째, 住民自律防犯隊의 運營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組織을 整備體系化하며, 支·派出所와 연계 管理運營을

內實化하고, 請願警察·用役警備員과 派出所間에 防犯應援體制를 確立하고, 自律防犯隊에의 支援을 強化한다. 셋째, 住民犯罪申告率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청소원·택시기사·집배원 등을 申告要員化하고, 申告者의 비밀과 安全을 保護하며, 有功市民의 보상을 擴大한다.

2. 警察의 位相 再定立

1) 基本姿勢

警察은 「對犯罪戰爭」遂行 過程에서 效率的인 犯罪檢擧를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展示效果를 위하여 無理한 行動을 하여서는 안되고, 의연한 法執行을 통하여 國民의 信賴와 協助를 받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사실 警察이 國民의 信賴를 받고, 그래서 自信을 가지고 警察의 責任과 權限으로 평소에 治安秩序維持에 盡力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大統領이 直接 「對犯罪戰爭」을 선포까지 할 必要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治安은 분명히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지키는 警察 本然의 業務이다. 따라서 오늘의 狀況에서 우리 警察은 조용히 反省을 하며 一種의 수치를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治安業務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 警察 스스로의 責任과 權限으로 해 나가며, 잘못했을 때는 國民에게 솔직히 謝罪를 받고, 잘 했을 때는 當당히 國民의 칭찬을 받아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必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當당한 姿勢의 確立을 위하여, 우리 警察은 治安業務를 獨自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여러 制度的 裝置에 대한 認識의 共感帶를 가져야 하겠고, 또한 이를 스스로 主張하고 나서는 勇氣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다름아닌 警察의 政治的 中立保障과 搜查權의 獨立問題이다.

2) 警察의 政治的 中立保障

이 問題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지만, 現在의 內務部長官(選舉를 관장하는 정치長官) 이하의 警察制度는 國民의 立場에서 볼때, 그것이 一般國民의 生命·財産을 지키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인지, 政權維持를 위하여 存在하는 것인지 항상 의혹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것은 解放後, 40餘年の 憲政史 속에서 政權이 國民의 不信을 받을 때마다 警察이 입었던 不名譽를 상기해 보면 實證이 되는 문제이다. 우리 警察이 하루 平均 16時間씩이나 그야말로 披私奉公의 精神으로 근무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그러한 不信을 받아야 할 아무런 理由도 없다고 본다. 政權은 有限이지만 警察·國民·國家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警察이 國民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協助를 얻기 위하여는 우선 內務部로부터 機構獨立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8月 1日부터 시행된 新警察法을 보면, 內務部の 外廳으로 警察廳을 두고 (§2), 警察의 人事·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重要政策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內務部長官 提請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任命하는 7人的 委員으로 구성되는 警察委員會를 新設하여 (§5, §6), 과거보다 警察의 政治的 中立面에서 進一步한 것은 평가될만 하지만, 아직도 모든것이 內務部 소속하여 있으므로 政治的 不信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본다.¹⁷⁾ 즉 이를 경찰의 政治的 中立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人事面에서 보면, 警正 이하는 경찰청장이 任用함으로써 문제가 없으나, 총경 以上은 아직도 內務部長官 提請으로 대통령이 任用하므로 政治的 中立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경찰청장에게 추천권이 法上 明示되어 있으므로(부칙 §6), 경찰위원회가 정한 엄격한 人事原則下에서 그 추천권을 公正하고 客觀性있게 행사함으로써 警察高位간부 人事에 政治性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理想的으로는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警察委員會 管理下에 警察廳을 두고, 그 廳長을 경찰위원회가

17) 拙稿, “경찰警察의 中立化方案”, 徐載根博士輩甲紀念論文集(1980), 所收: 安中喜, “警察의 機能은 正當化되어야 한다,” 政經文化(1980, 6); 崔宇吉, “警察의 中立化와 現代化”, 政東亞(1980, 5); 徐載根, “警察, 權力의 手記에서 벗어나라,” 政經文化(1988, 3) 등 참조.

18) 同前: 李廣福, 警察法制定과 警察의 位相, 警友行報(1991, 1, 20) 6면.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는 日本式制度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內務部로부터의 機構獨立이 南北對峙 狀況에서 民主主義體制 維持上 不可하다는 現實的 反論이 있으나, 警察의 政治介入 誤解의 素地는 더 큰 問題가 있다 할 것이다. 民主主義體制 維持의 問題는 警察의 對共情報業務를 安全部 등과 긴밀히 協助하도록 立法的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또한 警察의 中立化와 同時에 民主化하기 위하여는 自治體警察의 導入은 必須的이라 본다. 우리나라도 地方自治가 本格化되어 地方自治團體長이 住民에 의하여 選出되는 時期에는 廣域地方自治團體를 中心으로 自治警察制가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警察의 搜查權獨立保障

年間 100만건에 가까운 事件을 處理함에 있어서 警察의 搜查權獨立은 能率的·效率的인 搜查行政을 위하여, 또한 國民의 便宜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본다. 그 많은 事件을 소수의 檢事가 指揮한다는 것도 不可能하거나 實際로도 搜查書額만을 檢討하여 形式的인 指揮에 그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警察이 教養不足으로 人權侵害의 우려가 있다고 하나, 搜查權이 檢察에 集中됨으로써 남용될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또한 만약에 이제까지 警察의 人權侵害가 심했다면, 그것은 檢察의 警察에 대한 搜查指揮統制體制가 별 實效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의 反證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警察에게 獨自의인 搜查權을 부여하고 責任과 權限을 確實히 하여 警察 스스로 警察教養과 人權感覺을 높여가도록 맡겨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¹⁹⁾ 刑訴法 第196條에서 警務官 以下 司法警察官이 檢事의 搜查指揮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民法的으로 해석해 본다면 警察을 保護받아야 할 未成年者 등의 行爲無能力者로

19) 日本의 경우, 戰前까지는 우리와 같은 檢事官搜查權體制였고, 戰後 맥아더에 의한 1948年 刑訴法改訂當時 警察搜查權을 獨立시킴에 있어 檢察·辯護士會同에서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警察의 素養不足, 人權侵害의 우려였으나 그것이 오늘날 하나의 先例가 되어 抽擧, 轉·用에 있어서 搜查權의 人權保障에 관한 比較研究의 中心으로 韓國警察의 地位를 中心으로 一上 一下, 法律新聞(1991年 1月 31日, 2月 4日) 宇 참조. (本稿은 1990年 11月 3日 Asia 大學洋會創立紀念學術大會發表 論文이었음).

取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겠다. 이러한 搜查體系를 가지고는 警察의 自尊心은 둘째 치고라도 警察의 搜查行政이 제대로 發展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獨立된 警察行政機關에 獨自의인 搜查機能을 부여한다는 것은 民主主義的인 行政組織法上 當然한 事則일 것이다.

또한 警察이 法的素養이 不足하여 지휘받아야 한다고 하나, 私人 檢擧라는 것이 現場의 經驗과 뚜렷한 搜查官의 使命感으로 되는 것이지 法律知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法律知識 面으로 보더라도 現在4年制 警察大學에서 매년 우수한 警察幹部가 多數 배출되고 있고, 大學附設 搜查幹部研修所에서는 全國에서 우수한 警正·警監級 幹部를 選拔하여 6個月의 深度있는 搜查教育을 實施, 現場에 배치하고 있어, 그들에게 國民의 人權感覺에 맞는 搜查指揮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잡한 法律知識이나 專門知識을 갖는 事件은 檢察이 스스로 담당하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연히 檢·警間의 機能協助體制가 維持되리라고 본다.

檢事에게 搜查權이 集中됨으로써 國民이 겪는 不便은 어더한가, 예컨대 不起訴事案이 明白한 事件도 搜查의 主宰者인 檢事が 終結해야 함으로써 不必要하게 送致되어 形式的인 再確認으로 國民의 不便과 非能率을 야기한다. 또한 年間 約100만명의 警察 立件 嫌疑者가 檢事로부터 拘束 與否를 搜查指揮받기 위해 長期的 保護室에 대기하는 것 등이다.

現在 警察이 搜查權獨立을 制約하고 있는 法規定으로는 上記 刑訴法 第196條 以外에 同第195條〔檢事の 搜查〕, 憲法 第12條 第3項 및 刑訴法 第20條의 〔檢事の 令狀申請權獨立〕, 同第198條의 2〔檢事の 拘束場所監察〕, 同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 外의 搜查時 報告義務〕, 同第312條 第2項〔警察調書의 證據能力制限〕, 檢察廳法 第4條〔檢事の 指揮監督權〕, 同第53條〔司法警察官吏의 服從義務〕, 同第54條〔交替任用의 要求〕, 法務部令인 司法警察官吏職務規則 第11條〔搜查實務報告義務〕등으로 世界의 어느 法律도 이와 같은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規定들이 하루빨리 改正되어 民主的이고도 能率的인 搜查行政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²⁰⁾

Ⅵ. 結 語

「對犯罪戰爭」은 결코 一時的 싸움으로 勝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싸움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對犯罪戰爭」의 主務機關인 警察의 機能을 제대로 살려주어야 警察士氣가 진작되어 戰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政府가 推進中인 警察人員의 대폭 增加만으로는 不足하다. 警察官 한 사람 한 사람이 「對犯罪戰爭」에 대한 責任感과 使命感으로 充滿되도록 해야 한다. 警察이 政治圈에 흔들리고(政治的中立保障), 他機關에 주눅이 든다면(搜查權의 獨立保障) 「對犯罪戰爭」은 결코 成功할 수 없다고 본다.

그야말로 참된 民主法治社會를 이룩하고 「對犯罪戰爭」에서 勝利하기 위하여는 우리 社會의 警察의 位相은 반드시 再定立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 警察 스스로의 결연한 意志와 政府를 포함한 社會 各界各層의 警察을 바라보는 視角과 認識의 轉換이 절실히 冀望된다고 하겠다.

20) 拙稿, 前揭論文; 朴丁夏, 「警察搜查의 先進化를 위한 搜查權獨立에 관한 研究」(延大 行政學院 碩士學位論文, 1964); 車滿頌, 「搜查士의 指揮監督關係」『靑島』第2號(警察大學), 1986등 참조.

본다.²⁰⁾

VI. 結 語

「對犯罪戰爭」은 결코 一時的 싸움으로 勝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싸움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對犯罪戰爭」의 主務機關인 警察의 機能을 제대로 살려주어야 警察士氣가 진작되어 戰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政府가 推進中인 警察人員의 대폭 增加만으로는 不足하다. 警察官 한 사람 한 사람이 「對犯罪戰爭」에 대한 責任感과 使命感으로 充滿되도록 해야 한다. 警察이 政治圈에 흔들리고(政治的中立保障), 他機關에 주눅이 든다면(搜查權의 獨立保障) 「對犯罪戰爭」은 결코 成功할 수 없다고 본다.

그야말로 참된 民主法治社會를 이룩하고 「對犯罪戰爭」에서 勝利하기 위하여는 우리 社會의 警察의 位相은 반드시 再定立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 警察 스스로의 결연한 意志와 政府를 포함한 社會 各界各層의 警察을 바라보는 視角과 認識의 轉換이 절실히 冀望된다고 하겠다.

20) 拙稿, 前揭論文; 朴丁夏, 「警察搜查의 先進化를 위한 搜查權獨立에 관한 研究」(延大 行政學院 碩士學位論文, 1964); 車滿頌, 「搜查士의 指揮監督關係」『靑島』第2號(警察大學), 1986등 참조.